

클레임 보상 합의서

구매사 ㈜원익IPS(이하 "갑')와 공급사 파카코리아㈜(이하 "을")은 기발생한 클레임비용의 보전 및 보상을 위해서 본 합의서를 체결하고, 본 합의서의 이행사항들을 성실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제1조 [클레임 발생원인 및 내용]

"갑"이 "을"로부터 구매한 Air Valve(구매시기 2012년 1월 ~ 6월)의 불량으로 인하여 해당제품과 결합된 장착품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이로 인하여 "갑"은 Air Valve 뿐만 아니라 장착품 일체를 교체하게 되었고, "을"은 이러한 "갑"의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제품불량을 인정하였다.

제2조 [클레임 대상품목, 수량 및 가격]

클레임 대상품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, "갑"과 "을"은 이를 확인하다.

종 류	제 품 명	수 량	가 격	비고
Air Valve	93-17E882VFVF	17	8,000,000원	Parker 제품/ 교체완료
Regulator	74-3867KRU91-072	8	10,400,000원	非Parker 제품/현금보상
Regulator	64-2664KRK11-042	3	1,900,000원	非Parker 제품/현금보상

제3조 [클레임 보상방법]

"갑"은 "을"로부터 불량이 발생한 <u>Air Valve(93-17E882VFVF) 교체품 전량(17EA)</u>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, "을"은 제3자가 생산하여 "갑"에게 납품한 Regulator 11EA에 대해서 전액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다.

제4조 [클레임 비용의 지급]

"을"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가장 빠른(11월 15일) "을"의 정기지급일에 <u>금 12,300,000원</u>을 "갑"의 지정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, "갑"은 보상금의 수령하기 위해서 "을"의 ERP에 등록하기 위한 서류일체(사업자사본, 송금동의서 및 법인은행계좌사본)를 "을"에게 제출하기로 한다.

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, "갑"과 "을" 각각의 서명날인 후,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2년 11월 6일

"갑" 주식회사 원인아이피에스 경기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 대표이사 이 문용

"을" 파카코리아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의라 대표이사 유시 탁